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20 선고 2020가단52075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

담당변호사 장지혜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한별

담당변호사 성학녕

변 론 종 결 2022. 8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3분의 1에 관하여 2018. 3. 30.
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87,666,666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

87,666,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

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등

○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45399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‘D은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,351,489원 및 그중 99,390,903원에 대하여 2013. 9. 4.부터 2015. 1. 24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내용의 판결(이하 ‘이 사건 판결금 채권’이라고 한다)을 선고받았고,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F의 사망과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

○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가, 2018. 3. 30. 사망하였다(이하 F을 ‘망인’이라 한다).

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과 D이 있었는데,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2018. 3. 30.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1/2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.

○ 피고들은 2018. 8. 3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, 2018. 8. 31.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.

○ 한편,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. 5. 26. 채권최고액 352,800,000원, 채무자 D, 근저당권자

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위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8. 11. 5. 말소되었다.

2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약

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채무자인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1/3을 피고들에게 처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 상속지분 처분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그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D과 피고들은 악의(惡意)이다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 상속지분 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쟁점 및 판단 - 사해행위 성립 여부

가. 참고 법리

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(민법 제1008조)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)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

2000다51797 판결,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).

나. 구체적인 판단

앞서 본 기초사실, 을 제3 내지 15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, 그리고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른 재산분할결과는 D에 대하여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 상속지분 처분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○ 망인은 생전인 2010. 5. 26.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9,4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, D은 위 돈을 대출받아 소비하였고,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.

또한 망인은 2015. 4. 7.경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9,000만 원을 D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H에 교부하였고, 위 1억 원 채무는 변제되지 아니하였다. 한편, 망인은 위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주식회사 G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.

○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억 500만 원 정도였고, 이 사건 부동산 외 상속재산은 강릉시 I 34,711에 대한 공유지분 1701분의 144, J 687㎡에 대한 공유지분 1701분의 144가 있었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각 그 시가는 4,819,135원(=1,640원 x 34,711㎡ x 144/1701), 98,869원(=1,700원 x 687㎡ x 144/1701)이었다. 한편,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은 15,628,763원이다.

○ D의 수증액,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과 부양관계 등을 두루 고려할 때에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다.

4. 결론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

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실

(별지)

부동산 목록

(건물의 표시)

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서구

건물내역
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20층 아파트

1층 내지 4층 각 262.62㎡

5층 내지 20층 각 259.65㎡

지층 262.66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소재지번 1.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 5400.5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건물번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14.97㎡

(대지권의 표시)

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5400.5분의 40.19

- 이 상 -

